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3회 정례회
'19. 6. 13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
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9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6월 04일

3. 제안사유

○ 「정신보건법」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개정(시행 2017. 5. 30.)되었음.

○ 충북('18.12.31. 기준)은 정신장애 추정환자수 160,068명, 알코올사용장애 추정환자수 47,079명, 기분장애 추정환자수 25,557명, 조현병스펙트럼 장애 추정환자수 2,690명에 이르고 있음.

○ 이에,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·복지·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.

※ 타시·도 조례 제정 현황 : 12개 시·도 제정

<미제정(5) : 인천, 울산, 세종, 충남, 충북, 경남>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
나.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(안 제5조)

- 다.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규정 (안 제9조)
- 라. 도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·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함 (안 제10조)
- 마.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·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3조)
- 바.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 내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·육성 및 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 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영지)

가. 제출배경

- 1996년도 처음 제정되었던 「정신보건법」이 2017년 5월30일자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 되면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구체화하고,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,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, 평생교육 지원,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지원, 지역사회 거주·치료·재활 등 통합 지원,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음.
- 현재 충북('18.12.31. 기준)의 경우 정신장애 추정환자수 160,068명,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수 47,079명, 기분장애 추정환자수 25,557명, 조현병스펙트럼장애 추정환자수 2,690명이 거주하고 있고, 등록 정신장애인 수도 소폭 증가 추이를 보이다 2016년 이후 보합세로 전환됨.

※ 충북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

(단위: 명)

연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정신장애인 등록	3,520	3,566	3,660	3,719	3,699	3,698

※출처: 보건복지부(2017. 장애인현황)

- 또한,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·도 중 이미 12개 시·도에서 시·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는데, 충북은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.

※ 미제정(5) : 인천, 울산, 세종, 충남, 충북, 경남

- 이에, 충청도민의 정신질환 예방·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·복지·권리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충청도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3조**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, 정신질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, 도 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등의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,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·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·추진,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 해소와 권리 구제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**안 제5조**에는 상위법인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할 것과 이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, 특히 지원계획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명시하여, 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함.
- **안 제6조**에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관련 시설 등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함.

- 이는,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은 연간 8.3조원('12년,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) 으로 추정되며, 사회적 비용은 연령이 낮을수록, 질환이 만성화 될수록 높아지는 바, 정신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사전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**안 제7조**에는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 도 관할 11개 시·군 사업에 대한 총괄·지원 의무를 규정하였고, 특히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여, 유관 기관·시설 간의 업무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
- **안 제9조**에는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 - 센터는 기존 「정신보건법」에 따라 2013년부터 “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”란 명칭으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고, 2017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“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명칭을 개정하였음.
 - 센터는 충북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컨트롤센터로 역할을 담당하면서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정(시행 2012.3.31.)에 따라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업무(투입 인력 6명)까지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인력이 15명(비상근 센터장 포함)에 불과함.
 - 따라서 일부 타 시도(서울, 경기, 충남, 대전 등)는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, 향후 자살예방사업을 별도 센터로 분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
※ **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** (보건복지부,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)

- 1)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
- 2)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
- 3)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인력 및 자살예방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
- 4) 지역사회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
- 5) 지역주민 인식개선 사업 :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해소, 예방, 홍보
- 6) 지역특성화 사업
- 7) **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** : 24H 핫라인(1577-0199) 상담 및 출동서비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위기대응체계 구축

- **안 제10조**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·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규정하였음.
- **안 제12조**에는 도 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, 직업재활,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, 재활 서비스뿐만 아니라,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함.
- **안 제14조**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·육성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정신질환 예방·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·복지·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고,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조례안예고,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